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 정 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반포한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의 운영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한강공원과 세빛섬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문맥에 맞도록 ‘사업시행자로 하여금’을 ‘사업시행자가’로 변경하는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

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